

2016년 10월 1일

## ‘철(鐵) 스크랩’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됩니다



## ■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란?

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(고철)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지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

## ■ 적용대상 사업자(전용계좌 가입대상)

철 스크랩(고철)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(간이과세자 포함) 및 법인

## ■ 대상품목

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(고철)

## ■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주요사항

- (계좌개설)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전용계좌 개설 필요
- (대금지급) 사업자가 철 스크랩을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
- (가산세 등)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(쌍방, 공급가액의 10%),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음

## ■ 지정금융회사(7개)

국민은행, 농협은행(단, 지역농협은 제외), 대구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하나은행

## ■ 철 스크랩 전용계좌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

가까운 지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전용계좌 가입

구 분	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
공통 준비서류(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)	• 사업자등록증 • 통장 사용인감 • 대표자 실명확인증표
법인인 경우 추가서류	• 법인인감증명서 • 법인 인감 • 법인등기부등본(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)
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<b>[법인]</b> 위임장, 법인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 <b>[개인사업자]</b> 위임장, 개인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
※ 일부은행은 기업인터넷(폰)뱅킹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리인신규가 불가합니다. (계좌 개설만 가능)

※ 일부은행은 '가입시 구비서류'가 다를 수 있습니다. 해당은행에 방문전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■ 전용계좌 개설 및 준수사항

- 사업자는 위 지정금융회사 중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,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
- 전용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는 철 스크랩 시행일인 2016년 10월 1일부터 가능함  
(다만, 신규계좌에 한해 9월 1일부터 위 지정은행 영업점에서 전용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음)
- 구리스크랩 사업자는 2016년 9월 30일까지 기존 구리스크랩계좌(신한은행)만 사용이 가능하고, 2016년 10월 1일 이후 구리 및 철 스크랩 거래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정은행 변경 가능(기존 전용계좌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 변경 필요)

## ■ 문의안내

- 국세상담센터 126(2→2), 세무서(개인납세과, 법인납세과), 지방국세청(개인납세과), 국세청(부가가치세과)
- **고객센터 :** 국민은행(1644-0720), 농협은행(1588-2100), 대구은행(1588-5050), 신한은행(02-2007-9470), 우리은행(1588-5000), 중소기업은행(1566-2566), 하나은행(1599-1111)
- **제도안내 :** 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(홈페이지 하단 제도소개 배너 이용)